

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111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3월 2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매년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, 점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정비할 수 있도록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점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수시로 정비하도록 함(안 제20조제1항)

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자치법규 정비)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. 다만, 현행 자치법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정비할 수 있다.

1. 상위법령 제·개정 사항 미반영
2. 상위법령 위반
3.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
4.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
5.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위반
6.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

② 시장은 조례를 정비할 때에는 [별표]의 서울특별시 조례정비기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0조(자치법규 정비) 시장은 <u>정기적으로</u>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입법 후 오랜 기간 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</u></p> <p>2. <u>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</u></p> <p>3. <u>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끼치는지 여부</u></p> <p>4. <u>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지 여부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 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20조(자치법규 정비) ①시장은 <u>2년마다</u>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</p> <p>1. <u>상위법령 제·개정 사항 미반영</u></p> <p>2. <u>상위법령 위반</u></p> <p>3. <u>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</u></p> <p>4. <u>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</u></p> <p>5. <u>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위반</u></p> <p>6. <u>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</u></p> <p>② 시장은 조례를 정비할 때에는 <u>별표의 서울특별시 조례정비기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0조(자치법규 정비) ①시장은 <u>매년 정기적으로</u>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. <u>다만, 현행 자치법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정비할 수 있다.</u></p> <p>1.~ 6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조례를 정비할 때에는 <u>[별표]의 서울특별시 조례정비기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자치법규 정비)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. 다만, 현행 자치법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정비할 수 있다.

1. 상위법령 제·개정 사항 미반영
2. 상위법령 위반
3.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
4.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
5.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위반
6.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

② 시장은 조례를 정비할 때에는 [별표]의 서울특별시 조례정비기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
[별표]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서울특별시 조례정비기준표

정비유형	세부항목	정비판단	정비 의견
1. 상위법령 제·개정 사항 미반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위법령에서 신설된 내용을 조례가 반영하지 않는 경우 -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내용을 조례가 반영하지 않는 경우 - 상위법령에서 폐지되었는데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2. 상위법령 위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위법령에서 허용한 사항을 조례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- 상위법령에서 불허한 사항을 조례에서 허용한 경우 - 위의 내용 이외의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3.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령상 위임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하는 경우 - 법령상 위임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 경우 - 위의 내용 이외의 법령상 위임근거 없는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4.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위반한 경우 - 조례의 정책적 타당성을 상실한 경우 - 조례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 - 조례가 규정한 사항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- 자치사무의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-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을 규정한 경우 -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정된 경우 - 사업종료/재단해산, 특별회계폐지/위원회 미구성 등 적용대상이 없는 경우 - 제정 후 장기간 도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- 제정 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적용대상이 없는 경우 -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이 전무한 경우 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
<p>5.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위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한 경우 - 번역 투 문장을 사용한 경우 -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- 조(條) 및 항(項) 등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경우 -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히 밝히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는 경우 - 의미의 혼선을 가져오는 수식어 또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- 사용하는 용어는 일관성이 없는 경우 -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모순되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	
<p>6. 그 밖의 위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순 인용조문 오류/장관명칭 미변경/기관명칭 미변경 등 -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경우 -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 위반한 경우 -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 충돌이나 모순되는 경우 - 다른 유사 조례와의 통합 내지 분리가 필요가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자치법규 정비) 시장은 <u>정기적으로</u>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입법 후 오랜 기간 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</u></p> <p>2. <u>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</u></p> <p>3. <u>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끼치는지 여부</u></p> <p>4. <u>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지 여부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20조(자치법규 정비) ① 시장은 <u>매년 정기적으로</u>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. <u>다만, 현행 자치법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정비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상위법령 제·개정 사항 미반영</u></p> <p>2. <u>상위법령 위반</u></p> <p>3. <u>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</u></p> <p>4. <u>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</u></p> <p>5. <u>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위반</u></p> <p>6. <u>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</u></p> <p>② 시장은 <u>조례를 정비할 때에는 [별표]의 서울특별시 조례정비기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